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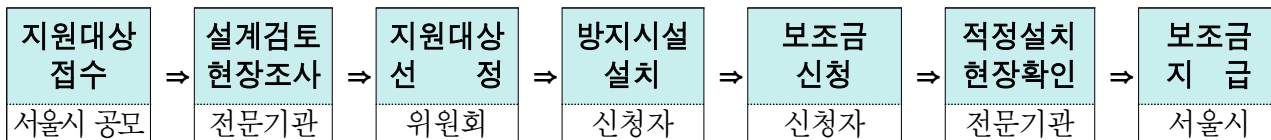
서울시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대상자 추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2월 ~ 12월
- 대상 :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총 사업비 : 206,100천원
- 추진절차



2 공고 개요

- 공고명 :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6. 4. 1.(수) ~ 4. 15.(수)(15일간)

3. 접수기간 : '26. 4. 9.(목) ~ 4. 15.(수)까지

4.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5. 지원내용 :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세라믹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집진시설, 복합방지시설, 기타시설

※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 기타시설은 위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6. 지원규모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부가세 제외)

방지시설 설치비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10%)
	계	국비 (50%)	시비 (40%)	
4,000만원	3,6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400만원

7.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 받은 해당 시설 3년 이상 운영

8.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접수처)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 (주 소)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생활환경과 우)14515

9. 제출서류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①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양식)

②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참조)

- 시설 설치내역 및 사양, 오염저감률, 성능보증내용

- 공사설계도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후 유지관리계획

※ 공사소요금액 산출은 붙임 서식 안내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종합정산정보, 종합물가정보,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③ 음식점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④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⑤ 사업장 위치도 1부(양식참조)
- ⑥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각 1부
- ⑦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 ⑨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 ⑩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 ⑪ 보조금 반납 협약서(양식참조) 1부
- ⑫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선정방법 및 심사개요

1. 선정방법

- (1차) 설계검토, 현장조사 및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정량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2.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심사내용 : 사업 시급성, 개선효과,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고려하여 심사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지원 필요성	- 최근 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 지원 필요성 -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 음식점 규모(소상공인) 여부 등	30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 지원 대상 업종의 적정성 - 방지시설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미세먼지·악취 저감 예상 효과	40
사후관리 적정성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15
사업주의 의지	- 사업주의 의지 및 적극성	15

3. 지원절차



4. 보조금 환수

○ 사업장 폐업 등으로 방지사설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	-

※ 방지사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의무 승계됨

5. 선정결과 공개 : '26. 5월

6. 유의사항

- 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시 심사탈락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참여기업은 서울시, 현장확인 전문업체, 자치구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월)에 따름
-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시청 생활환경과로 문의 ☎02-2133-4254

- 붙임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서식1)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공신고서(서식2)
3.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신고서(서식3)
4.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4)
5. 위임장(서식5)
6.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포기확인서(서식6).